공 개

의안번호	제 238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9. 2. (제 15 차)

의결사항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 출 연월일	2026. 9. 2.

1. 의결주문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ETF·ETN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, 국내 지수 또는 특정 산업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외국인 주식통합계좌를 통한 ETF·ETN(단, 레버리지·인버스 제외) 거래 허용 (금투업규정 안 제6-7조제7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규제개혁위원회 합의완료(비규제)

라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5.22. ~ 7.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<별 지1>

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-7조제7항 중 “주식”을 “주식(영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(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은 각각 제외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-7조(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) ① ~ ⑥ (생 략) ⑦ 국외에서 투자매매업,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·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(이하 "외국인 통합계좌"라 한다)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⑧ ~ ⑩ (생 략)	제6-7조(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주식(영 제7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(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증권은 각각 제외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⑧ ~ ⑩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본시장과	자본시장감독국
연 락 처	02-2100-2656	02-3145-7587